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18일, 이상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상회의원)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등록을 위해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목되고 있는데, 최근 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록방법의 예시에 ①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과 ②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등록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록방법의 예시로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방법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과 함께 새로운 등록방법인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은 임의 제거 및 분실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 동물 등록방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체 식별 소요 시간 및 비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생체인식 방식이 기술 검증 중이므로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개체 식별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방식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입장임.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대부분의 국가(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동물검역의 필수요건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이 의무화되어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중복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동물 등록 방식을 내장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은 임의제거·분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 등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취지와 유전자검사의 비용, 개체 식별 소요시간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